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8
----------	----------

제출연월일	2010. 2.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공립어린이집(소만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종사자의 임면사항 및 임용연령에 관한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 또는 삭제하는 한편, 어린이집 이용대상과 보육료, 보육의 우선 제공 순위, 보육정책위원회의 명칭 및 종사자의 휴가·휴직 등에 관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을 간명화 함(안 제1조).

-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 「영유아보육법」
- 거창군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나. 종전 본문에서 규정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에 신규로 설치한 소만어린이집을 추가하여 별표로 규정함(안 제2조, 별표 신설).

- 명칭 : 소만어린이집(2008. 3. 6일자 인가)
- 위치 : 거창읍 대동리 소만주공아파트 104동 지상1층

다. 어린이집 이용대상, 보육의 우선 제공 순위, 보육료의 결정, 보육정책위원회의 명칭 등을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라. 어린이집 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12조).

- 현행 : 어린이집의 모든 종사자를 군수가 임면
- 변경 : 어린이집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

마. 어린이집 종사자의 임용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함(안 제13조제2항 삭제).

- 시설장(40세이상 55세이하), 기타종사자(20세이상 32세이하)의 임용연령 삭제

바. 어린이집 종사자의 휴가 및 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지방공무원법」 외에 특별히 구분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함(안 제16조, 제17조, 별표 1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8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4조, 제29조
-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1. 6. ~ 2010. 1. 2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등록규제 폐지 1건(제13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하여”를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로, “거창군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거창군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거창군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나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장애인으로서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의 자녀
5.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육료) 보육료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위원회”를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어린이집 시설장 및 기타종사자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를 “어린이집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기타종사자”를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휴가) 어린이집 종사자의 휴가종류와 연가일수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휴직) 어린이집 종사자의 휴직 사유와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8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5인”을 “5명”으로, “위원회”를 “위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기타종사자”를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거창군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주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td> <td>거창읍 중앙리 333-2번지</td> <td></td> </tr> <tr> <td>상동어린이집</td> <td>거창읍 상림리 274-1번지</td> <td></td> </tr> <tr> <td>중동어린이집</td> <td>거창읍 대평리 938-4번지</td> <td></td> </tr> <tr> <td>동동어린이집</td> <td>거창읍 대동리 52-1번지</td> <td></td> </tr> <tr> <td>위천어린이집</td> <td>위천면 장기리 486-9번지</td> <td></td> </tr> </tbody> </table> <p>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p>제4조(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0세~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2. 거창군 보육위원회(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의한 12세이하의 저학년 아동 	명칭	주소	비고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거창읍 중앙리 333-2번지		상동어린이집	거창읍 상림리 274-1번지		중동어린이집	거창읍 대평리 938-4번지		동동어린이집	거창읍 대동리 52-1번지		위천어린이집	위천면 장기리 486-9번지		<p>제1조(목적)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 거창군 공립어린이집-----</p> <p>제2조(명칭과 위치) 거창군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p> <p>제3조(업무) ----- 각 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p>제4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p>
명칭	주소	비고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거창읍 중앙리 333-2번지																		
상동어린이집	거창읍 상림리 274-1번지																		
중동어린이집	거창읍 대평리 938-4번지																		
동동어린이집	거창읍 대동리 52-1번지																		
위천어린이집	위천면 장기리 486-9번지																		

현행	개정안
<p>제5조(입소순위) 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u>의한</u> 수급자의 자녀</p> <p>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한 모·부자가정의 자녀</p> <p>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매년)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자녀</p> <p><신 설></p> <p><신 설></p> <p>4. 맞벌이 가정의 자녀</p> <p>5. 일반가정 자녀</p> <p>② (생략)</p> <p>제6조(보육료) <u>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보육아동의 급식비, 시설의 관리,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 보육단가로 한다.</u></p>	<p>제5조(입소순위) ① ----- <u>각 호</u>-----.</p> <p>1. ----- <u>따른</u> -----</p> <p>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p> <p>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p> <p>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나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장애인으로서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의 자녀</p> <p>5.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p> <p>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p> <p>7.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보육료) <u>보육료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7조(위탁운영) ① (생략)</p> <p>②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u>의거</u> 군수에게 위탁관리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u>기타</u>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u>의하여</u>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u>보육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p>	<p>제7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따라</u> ----- ----- ----- <u>그 밖에</u> ----- ----- <u>따라</u> ----- -----.</p> <p>③ ----- ----- <u>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u>-----.</p>
<p>④ (생략)</p> <p>제1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p> <p>1. ~ 4.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행위의 금지)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계약의 해제)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제11조(계약의 해제)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12조(종사자 임면) <u>어린이집 시설장</u> 및 기타종사자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단서 생략)</p>	<p>제12조(종사자 임면) <u>어린이집 시설장</u> 및 보육교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단서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3조(종사자의 자격) ① (생략) ② 어린이집 종사자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시설장 : 40세이상 55세이하 2. 기타종사자 : 20세 이상 32세 이하</p>	<p>제13조(종사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p>																		
<p>제14조(근무상한 연령) ① (생략) 1. (생략) 2. 기타종사자 : 57세 ② (생략)</p>	<p>제14조(근무상한 연령)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u> : --- ② (생략)</p>																		
<p>제16조(휴가) 종사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p> <p>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p>	<p>제16조(휴가) 어린이집 종사자의 휴가 종류와 연가일수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75 1142 774 1568"> <thead> <tr> <th>근속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3월 이상 6월 미만</td> <td>4일</td> </tr> <tr> <td>6월 이상 1년 미만</td> <td>7일</td> </tr> <tr> <td>1년 이상 2년 미만</td> <td>10일</td> </tr> <tr> <td>2년 이상 3년 미만</td> <td>13일</td> </tr> <tr> <td>3년 이상 4년 미만</td> <td>16일</td> </tr> <tr> <td>4년 이상 5년 미만</td> <td>19일</td> </tr> <tr> <td>5년 이상 6년 미만</td> <td>22일</td> </tr> <tr> <td>6년 이상</td> <td>23일</td> </tr> </tbody> </table>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4일	6월 이상 1년 미만	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2일	6년 이상	23일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4일																		
6월 이상 1년 미만	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2일																		
6년 이상	23일																		
<p>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년 2월 범위 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필요기간을 허가한다.</p> <p>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7조(휴직) 임면권자는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1. 휴직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나.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육아코자 출산 특별휴가를 원치 않을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다.</p> <p>2.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p> <p>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p> <p>나.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는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p> <p>다. 만 1세 미만의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p> <p>3. 휴직의 효력은 휴직 중인 종사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직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복귀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 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4.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p>	<p>제17조(휴직) 어린이집 종사자의 휴직 사유와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8조(징계위원회) ① (생략)</p> <p>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거창군의회 의원,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초등장학사로 구성한다.</p>	<p>제18조(징계위원회) ① (생략)</p> <p>② ----- 1명----- 5명 --- 위원----- ----- ----- -----.</p>
<p>제19조(징계권자) (본문 생략)</p> <p>1. (생략)</p> <p>2. 기타종사자 : 임면권자</p>	<p>제19조(징계권자) (본문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u> : -----</p>

[별표]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칭	위치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33-2번지
상동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274-1번지
중동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938-4번지
동동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2-1번지
위천어린이집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86-9번지
소만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소만주공아파트 104동 지상1층